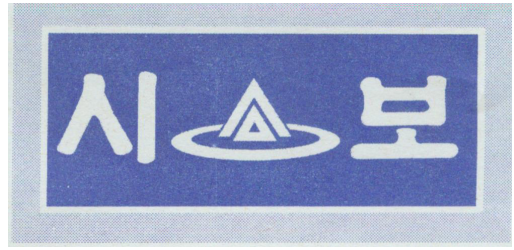


#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484호 2013. 1. 18.(금)

## 【예 규】

- 제209호 공주시 최고고도지구 해제지역내 도시관리방안 수립 지침 일부개정지침 ..... 1
- 제210호 공주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 11

## 【고 시】

- 제2013 - 12호 측량기준점 성과고시 ..... 28

## 【공 고】

- 제2013 - 55호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29

회 람							
--------	--	--	--	--	--	--	--

공주시 최고고도지구 해제지역내 도시관리방안 수립  
지침 일부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 1월 18일

공주시 예규 제209호

### 공주시 최고고도지구 해제지역내 도시관리방안 수 립 지침 일부개정지침

공주시 최고고도지구 해제지역 내 도시관리방안 수립 지침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2조 제목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저층건물 밀집지역”이란 사업대상지 원경의 범위 내 4층 이하의  
건축물이 300호 이상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단독주택이 8  
0퍼센트 이상 분포된 지역을 말한다.

제4조 앞의 “제2장 도시관리방안”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높이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르며,”를 “높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최고층수는 10층, 최고높이 40m이하”를 “최고높이는 40m이하(옥탑층 등 그 밖의 구조물의 높이를 포함한다.)”로 하며, “의해”를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타원형”을 “타워형”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후단 중 “선정기준”을 “선정기준 등”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중·고층”을 “중층·고층”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4조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말한다”를 “말하며, 그 높이는 7부능선으로 한다”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주요지점별 지반고(GL) 현황

제15조제2항 중 “층수(높이)”를 “높이”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건축계획 기준(제12조제1항·제2항 관련)

1. 주동길이는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4호 연립 또는 50m 이하로 계획한다. 다만, 국민주택규모(85㎡) 미만인 경우에는 6호 연립 또는 60m 이하로 계획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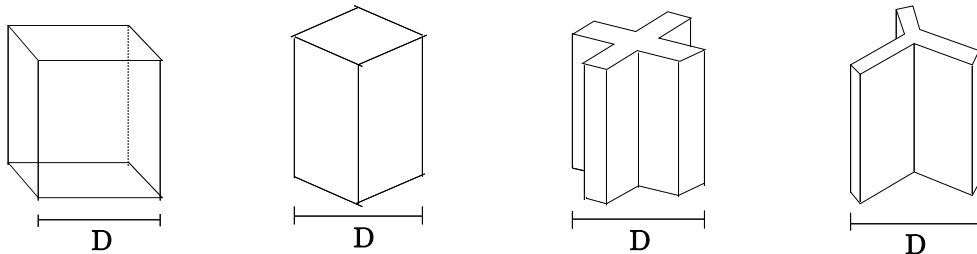
가. 시각적, 심리적 중압감 해소 / 일조 및 조망확보를 위한 기준

○ 주동길이 = 조망축 방향 건물 각 동의 폭(D) : 모든 건축물의 주동길이는 입면의 최대길이임

○ 주동길이 기준 : 4호 연립 이하 / 50m 이하 [다만, 국민주택규모(85㎡) 미만인 경우 6호 연립 또는 60m 이하]

나. 주동길이 산정방법

○ 주동길이는 건물의 전면에 대한 수직투영도상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절곡형의 건물로써 여러 방향에서 수직투영도상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긴 쪽의 길이를 말함 (다만, 절곡형 공동주택에서의 각 건물의 조합각도는 120도 이하가 되어야 하며, 초과시는 각 건물 전면부 길이의 합산으로 산정함)



2. 조망차폐율은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60퍼센트 이하로 계획한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85㎡) 미만이거나 평균층수가 15층 이하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하로 계획할 수 있다.

가. 주요간선도로변 및 녹지축면으로의 개방감과 통경공간 확보를 위한 기준

○ 조망차폐율 = (주동의 투영입면적의 합 ÷ 조망면적) × 100

○ 적용예시(산식) :  $[(a+b+c+d+e+f+g+h) \div (A \times B)] \times 100$

A : 단지내 가장 높은 주종의 높이(옥탑부 제외)

B : 단지내 최장길이

○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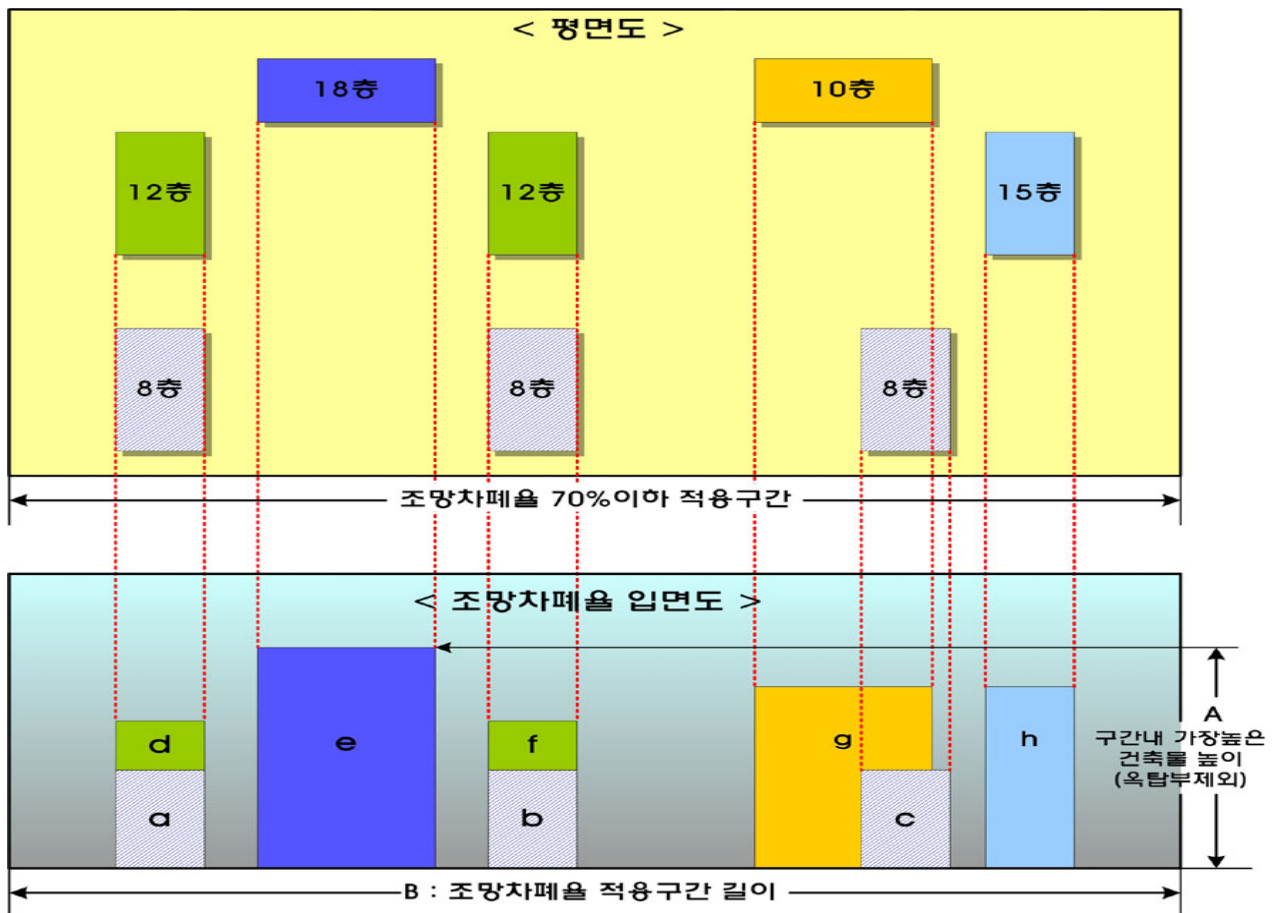
- 60퍼센트 이하

- 국민주택규모(85㎡) 미만 이거나 평균 층수가 15층 이하인 경우 70 퍼센트 이하

나. 조망차폐율 산정예시도

○ 조망차폐율 : 건축물의 입면적의 합계를 단지의 조망면적으로 나눈 값이며

시곡면분석에서 제시된 조망점이 위치한 도로에서 산정함



3. 주변지역과의 단절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가. 지형변형비율 = (절·성토 면적 ÷ 대지면적) × 100

나. 적용기준 : 30퍼센트 이하

○ 절·성토 면적은 종단면으로 보아 6m 이상 절·성토한 면적을 말한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3. ~ 6. (생략)

<신설>

제2장 도시관리방안

제5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4, 별표 8, 별표 9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및 상업용 고층건축물 등을 신축시 수립된 도시관리 방안이 이 지침의 개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생략)

제7조(건축물의 높이) ① 건축물

의 높이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르며, 제15조의 시곡면 분석에 따라 결정한 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  
-----.

3. ~ 6. (현행과 같음)

7. “저층건물 밀집지역” 이란 사업대상지 원경의 범위 내 4층 이하의 건축물이 300호 이상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단독주택이 80퍼센트 이상 분포된 지역을 말한다.

<삭제>

제5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  
-----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건축물의 높이) ① -----

- 높이는 -----  
-----  
-----.

② (현행과 같음)

③ 저층건물 밀집지역과 인접된 지역에서 도시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경우 예는 급격한 층수변화에 의한 돌출경관 및 부조화를 방지하도록 사업 대상지 경계 부분의 주동의 최고층수는 10층, 최고높이 40m이하의 범위 내에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폭 25m 이상인 도로(주동이 접한 대지길이의 1/2 이상이 폭 25m 이상이어야 한다), 공원 및 완충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에 의해 이격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건축물의 형태) ① 판상형 형태의 공동주택은 가급적 지양하며, 탑상형 · 복합형 · 유선형 등 건축물 형태를 다양화하여 아름다운 공동주택 경관을 형성한다. 특히 조망공간 확보가 필요한 지역은 타워형을 권장한다.

② ~ ⑤ (생략)

제10조(조망점 선정기준) ① · ② (생략)

③ 조망점 선정은 선적 조망점

③ -----  
-----  
-----  
----- 따른 -----  
-----

-----최고높이는 40m이하(옥탑층 등 그 밖의 구조물의 높이를 포함한다.)-----  
-----  
-----  
-----

----- 따라 -----  
----- .

제8조(건축물의 형태) ① -----  
-----  
-----  
-----  
----- . -----

----- 타워형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조망점 선정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④ 단지조성시 지나친 절·성토로 인한 주변지역과의 단절과 부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형 변형비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사업대상지가 주변의 인접토지와 6m 이상 낮거나 높아 절·성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주요 조망대상) 주요 조망 대상은 ‘공주시 도시경관계획’ 및 ‘공주시 고도도시재생 마스터플랜’에 의한 조망대상 별표 5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구역 및 시설결정선 또는 여기에 일정 높이를 더한 가상의 경계선을 말한다. 다만, 공원구역 및 시설결정선이 없는 산지의 경우 현재의 스카이라인을 말하며, 인접된 능선에 의하여 공원구역 및 시설결정선이 차폐되는 경우에는 그 능선을 말한다.

제15조(시곡면 분석) ① 도시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자는 시곡면 분석을 실시하고 제안된 건축 계획이 시곡면상에 얼마나 돌출되

<삭 제>

제14조(주요 조망대상) -----  
-----  
----- 따른 -----  
-----  
-----  
----- 말하며, 그 높이는 7부능선으로 한다.-----  
----- 따라 -----  
-----.

제15조(시곡면 분석) ① -----  
-----  
-----

는지를 분석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② 시곡면 분석은 제10조에 따라 선정한 조망점에서 조망대상을 연결하는 시곡면상에 가급적 건축물이 돌출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층수(높이)를 계획하여야 한다.

-----  
-----.

1. ~ 3. (현행과 같음)

4. 주요지점별 지반고(GL) 현황

② -----  
-----  
-----  
-----  
----- 높이-----  
-----.

공주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공 주 시 장 이 준 원 인

2013 1월 18일

공주시 예규 제210호

### 공주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주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구체화하고,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디자인 수준을 보다 효율적으로 향상시켜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원칙) 모든 공공시설물의 제작·설치는 통합디자인, 사용자중심 디자인, 소통과 참여디자인, 지속가능한 디자인, 지역정체성 디자인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적용기준) 공주시 공공시설물별 디자인 적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지침을 적용한다.

1. 문화재 관련시설물 : 문화유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문화재청)
2. 관광안내 시설물 : 한국관광안내표지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문화체육관광부)
3. 보도시설물 :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4. 도로표지 :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제4조(글씨체 및 색채) ① 글씨체는 다양한 측면의 도시성격에 부합되도록 융통성 있게 사용하되, 권장 글씨체는 ‘별표 2’ 를 적용한다.

② 색채는 충남공공디자인기본계획의 백제권 색상을 기본으로 하고, 시설물별 색상은 각각의 가이드라인 컬러를 적용하되, 그 밖의 사항은 ‘별표 2’ 와 같다.

제5조(그 밖의 사항) 본 지침의 세부사항은 공공시설물 실시설계서를 활용하고,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거나 적용에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공주시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주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기준(제3조 관련)

1. 버스승강장

<설치기준>

형태	<p>&lt;동지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버스승강장은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된다.</li> <li>② 기둥·벽체·지붕으로 구성되며, 보도 내 점유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벤치, 안내사인 등의 기능시설은 벽체와 일체형으로 한다.</li> <li>③ 지붕면을 활용하여 조명 등의 부속시설을 매입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li> <li>④ 버스노선정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광고판)을 두어 그래픽 남용을 방지한다.</li> <li>⑤ 파손이나 훼손시 부분적인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li> <li>⑥ 지붕은 눈비를 고려하여 5도 이내의 경사각을 적용한다.</li> <li>⑦ 안내사인은 벽체의 유리면을 활용하여 픽토그램을 적용하며, 안내사인외의 그래픽정보(광고 등)는 표기하지 않는다.</li> </ul>
	<p>&lt;읍·면지역&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존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을 표준디자인으로 리모델링한 후 활용한다.(동지역 신규 버스승강장 설치 시 기존 승강장을 리모델링 후 이동설치 사용)</li> </ul>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변의 시각적 개방성 확대를 위해 얇은 기둥형 스틸구조체(내부전기실 등 설치 가능)와 투명강화유리를 이용하여 설계한다.</li> <li>② 벤치 등은 목재를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안정감 및 친근함을 높여준다.</li> </ul>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황색 - Pantone 151C</li> <li>② 회색 - DIC 526</li> <li>③ 글자·버스픽토그램 - 백반사시트</li> <li>④ 왕관그래픽 - Pantone Warm Gray 5M</li> </ul>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승강장 내부의 광고판은 노선정보표기 외 다른 정보표기는 지양한다.</li> <li>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설치한다.</li> </ul>

<표준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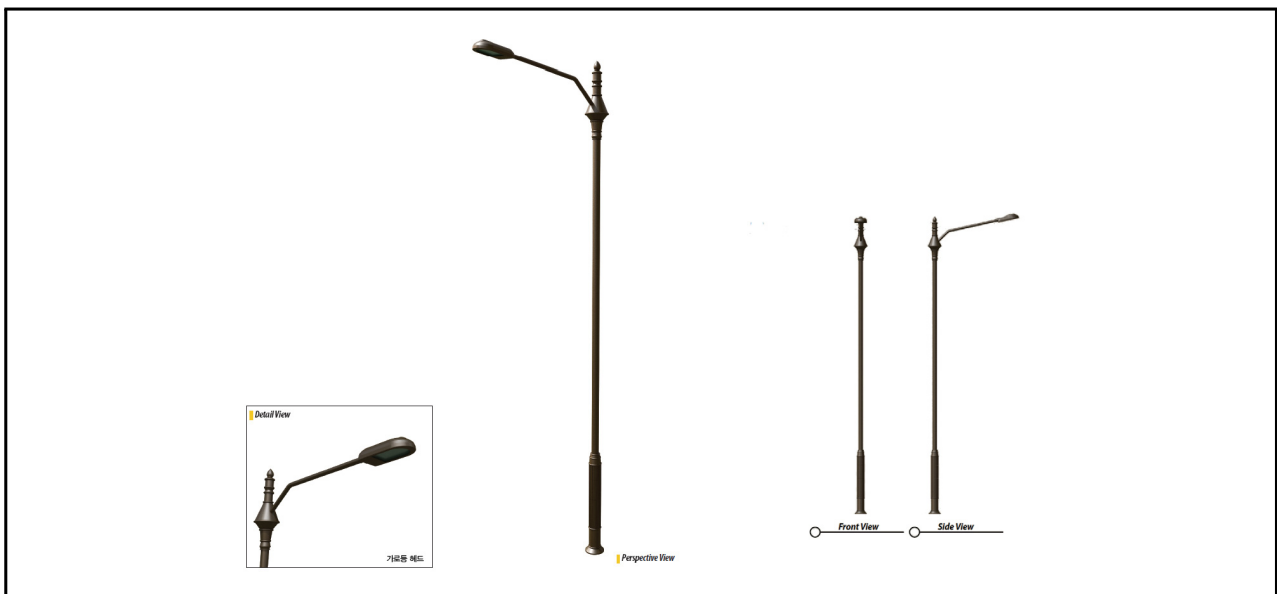
			
동지역		읍·면지역(리모델링)	
와이드형	슬림형	철재	조적조

## 2. 가로등

### <설치기준>

<p>형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가로등의 지주대와 조명대는 원통형을 기본으로 간결한 직선 이미지로 설계한다.</li> <li>② 헤드램프는 두께를 최소화한 원통형을 기본으로 설계한다.</li> <li>③ 지주대에 부가적인 시설물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li> <li>④ 도로안전 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설계한다.</li> </ul>
<p>재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가로등의 재료는 스틸을 주재료로 사용한다.</li> <li>② 야간운전자 등을 고려하여 반사도가 적은 무광처리를 원칙으로 지주대와 조명대, 램프헤드의 색채는 동일한 색채를 적용한다.</li> <li>③ 램프의 색상에 주의하며 눈부심이 적고 광효율이 높으며 수명이 긴 램프 또는 LED를 사용한다.</li> <li>④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대안(특수도료, 스프레이 살포식, 요철금형 등)을 마련한다.</li> </ul>
<p>색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회색 - DIC 526</li> </ul>
<p>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조명시설과 도로표지, 교통신호기 등이 일체화된 통합지주 설치를 권장한다.</li> <li>② 점검구는 하부에 설치하고, 지면 고정장치는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li> </ul>

### <표준디자인>



### 3. 가로화분대

#### <설치기준>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화분대는 소형 관목 및 지피식물에 적합한 생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li> <li>② 화분대는 외부통과 내부통으로 구성하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분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li> <li>③ 설치공간의 특성에 따라 배치계획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동형 구조로 설계한다.</li> <li>④ 화분대 설치시 배수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한다.</li> <li>⑤ 설치공간의 바닥면에 독립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li> <li>⑥ 벤치, 볼라드, 가로수 보호 덮개 등 다른 시설물과 통합하여 설계할 것을 권장하며, 이 경우 식물의 생육 및 교체를 위한 관리시 접근이 편리하도록 설계한다.</li> </ul>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화분대의 외부통은 타 시설물과의 시각적 통합성을 고려하여 지정 재료인 스틸로 설계하고 습기로 인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열처리 도장을 한다.</li> <li>② 내부통은 내구성을 고려하여 스테인리스 스틸을 기본으로 하며, 비용절감을 위해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할 수 있다.</li> <li>③ 목재 사용 시에는 방수, 방부, 방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다.</li> </ul>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회색 - DIC 526</li> <li>② 왕관그래픽 - Pantone Warm Gray 5M</li> </ul>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볼라드나 펜스 기능 대응으로 적극 활용한다.</li> <li>② 물 공급과 배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li> <li>③ 배수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한다.</li> </ul>

#### <표준디자인>



#### 4. 자전거보관대

##### <설치기준>

<p>형태</p>	<p>① 자전거 보관대는 도시 전체의 일관성을 고려한 동일한 디자인을 적용한다.                  ② 구조체를 최소화하여 재료의 사용을 줄이고 공간에 개방성을 부여한다.                  ③ 핸들의 폭,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보관대간 간격을 설계한다.                  ④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설계한다.</p>
<p>재질</p>	<p>① 자전거와 접촉시 상호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내구성이 강한 도장으로 표면처리(무광)를 한다.</p>
<p>색채</p>	<p>① 백관(steel 고유 색상, 도색 지양)</p>
<p>설치</p>	<p>① 단시간 보관이 주목적인 자전거 보관대는 정돈된 이미지의 가로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쉘터를 제외한 자전거 길이만 설치하여 부피감을 최소화한다.                  ② 사인물 부착을 지양하되 자전거 보관대가 군집형으로 설치되는 공공공간의 경우 지정된 자전거 안내사인을 설치한다.                  ③ 다른 구조물이나 공간요소와 결합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④ 보도폭이 1.5m이하일 경우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를 금지한다.</p>

##### <표준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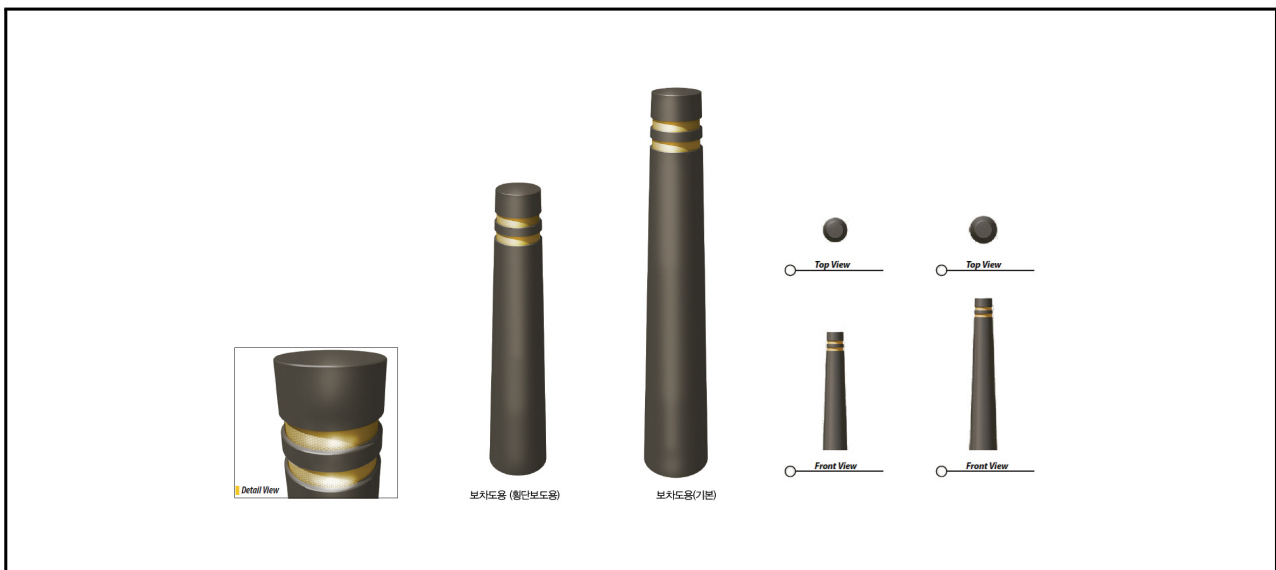


## 5. 블라드

### <설치기준>

<p>형태</p>	<p>① 블라드는 지름을 최소화시킨 원기둥 형태를 기본으로 한다.                  ② 블라드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센티미터 내외로 하고, 그 지름은 10~20센티미터 내외로 한다.</p>
<p>재질</p>	<p>① 주재료로 스틸과 우레탄을 사용하되, 보행시 충격 흡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② 야간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다방면에서 인지되는 형태의 반사판을 설치한다.</p>
<p>색채</p>	<p>① 회색 - DIC 526                  ② 황색 - 황반사시트</p>
<p>설치</p>	<p>① 블라드는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으며,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협의를 거쳐 1.5m내외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② 차량 충돌 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지면에 매입되는 하부 구조로 설계하며, 지면 고정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고정장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③ 블라드의 0.3미터 전면(前面)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의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p>

### <표준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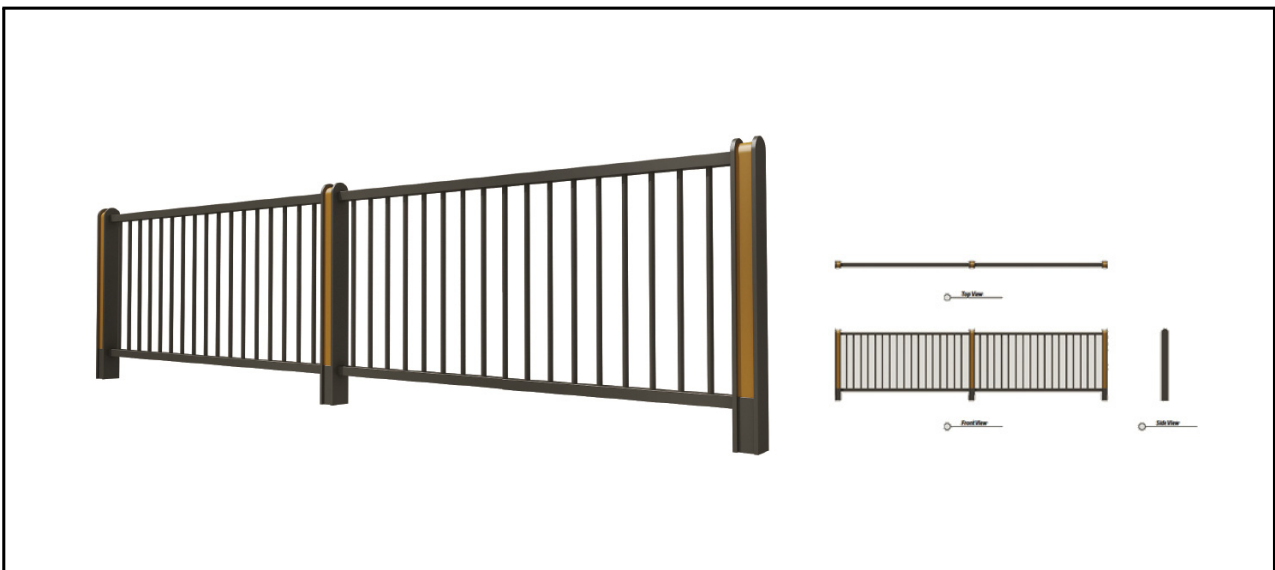


## 6. 보호펜스

### <설치기준>

<p>형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펜스는 지주대, 방호재로 구분되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설계한다.</li> <li>② 구조를 유니트화 하여 다양한 길이로 연장 설치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li> <li>③ 두께감이 얇은 직선형 평판을 기본으로 하여 주변공간으로의 투과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한다.</li> <li>④ 방호재는 안전성(구조강도)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굽기를 최소화시켜 경량화된 구조를 적용한다.</li> <li>⑤ 향후 유지관리를 위해 용접방식을 지양하고 볼트를 이용한 설치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다.</li> </ul>
<p>재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행에 방해될 수 있는 유광재료를 지양하고, 표면은 내구성이 있는 도장(무광)으로 마감 처리한다.</li> <li>②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이 있는 스틸을 주재료로 설계한다.</li> </ul>
<p>색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황색 - Pantone 151C</li> <li>② 회색 - DIC 526</li> </ul>
<p>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보행로와 차로의 연속된 구분이 필요한 곳, 보행자의 무단횡단 및 출입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되는 곳, 스쿨존이나 금융기관 주변 등 보행안전확보를 위한 구역을 중심으로 설치한다.</li> <li>② 지지대와 앵커볼트는 지면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한다.</li> <li>③ 야간에 인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li> </ul>

### <표준디자인>



## 7. 휴지통

### <설치기준>

<p>형태</p>	<p>① 휴지통은 몸체, 내통으로 구성된다.                  ② 쓰레기 투입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자가 손쉽게 몸체, 내통을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③ 하단부는 빗물이나 충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p>
<p>재질</p>	<p>① 내화성 및 내구성에 강한 재질을 사용한다.                  ② 외부통과 뚜껑은 스틸을 기본으로 하여 내구성이 있는 무광도료로 표면을 마감한다.                  ③ 내부통은 부식 방지 및 내구성을 위해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며 별도의 채색을 하지 않는다.                  ④ 뚜껑이 설치되는 경우 몸체와 동일한 재질을 적용한다.</p>
<p>색채</p>	<p>① 황색 - Pantone 151C                  ② 회색 - DIC 526                  ③ 픽토그램 - 백반사시트</p>
<p>설치</p>	<p>① 휴게시설물과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② 우천 시 빗물 유입을 최소화하도록 쓰레기 투입구는 측면 또는 윗면을 이용한 간접형으로 설치한다.                  ③ 휴지통 안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내부 밑면에 배수구를 마련한다.</p>

### <표준디자인>



## 8. 벤치

### <설치기준>

<p>형태</p>	<p>① 벤치가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알맞은 디자인을 적용한다.                  ② 고정형으로 설계하되 설치 및 분리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③ 좌판은 빗물이 고이지 않고 건조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④ 구조체는 시각적 부피감을 최소화하고 공간의 특성에 따라 가변성 있는 디자인을 적용한다.                  ⑤ 크기 및 구조는 &lt;한국인의 인체치수 조사&gt;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계한다.</p>
<p>재질</p>	<p>① 좌판 및 등받이에는 목재 사용을 권장한다.                  ② 목재 사용시 나뭇결 방향이 좌판과 등판의 장 방향과 일치하도록 설계한다.</p>
<p>색채</p>	<p>① 황색 - Pantone 151C                  ② 회색 - DIC 526</p>
<p>설치</p>	<p>① 주변 시설물과의 연계성 및 보행 안전성을 확보하여 설치한다.                  ② 조명과 인접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③ 폐쇄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착석방향을 고려해 설치하도록 한다.                  ④ 벤치 하부의 고정용 볼트는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p>

### <표준디자인>



## 9. 버스·택시정류장 표지

### <설치기준>

형태	① 좁은 보행로에서는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단독형으로 설치한다.
재질	① 시각적 자극을 주지 않는 무광택 재질의 사용을 권장한다.
색채	① 황색 - Pantone 151C ② 회색 - DIC 526 ③ 픽토그램 - 백반사시트 ④ 그래픽 - Pantone Warm Gray 5M
설치	① 지면 고정장치는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②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곳은 정류장표지는 설치하지 않는다. ③ 기존 버스·택시정류장 표지판을 표준디자인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한다.

### <표준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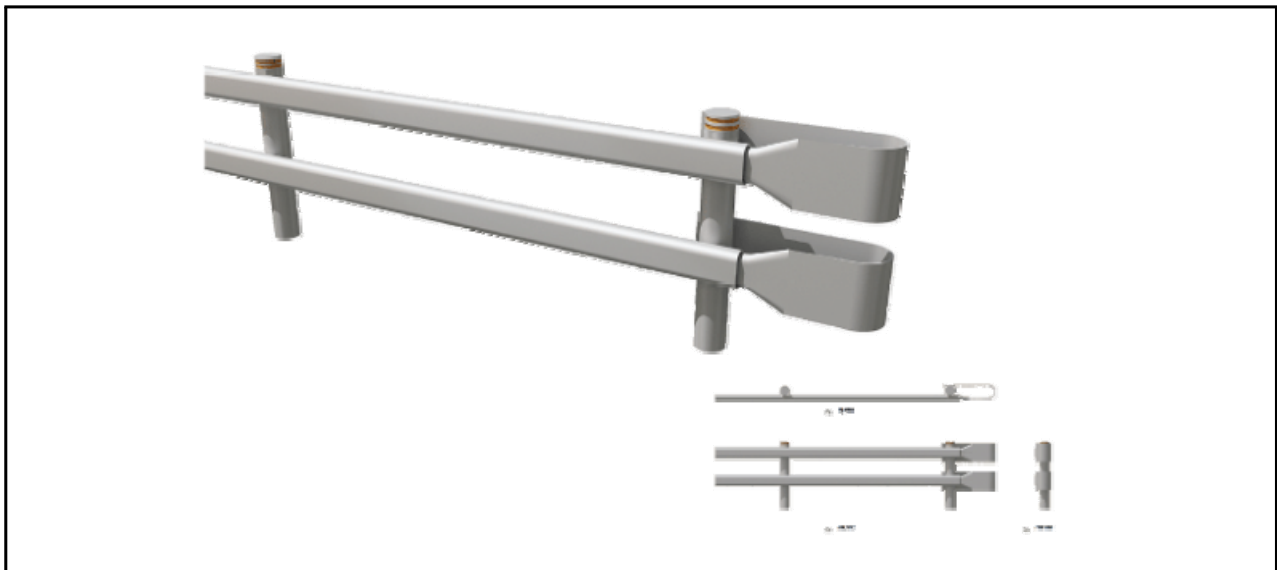


## 10. 가드 레일

### <설치기준>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등근 안전한 형태를 권장한다.</li> <li>②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를 권장한다.</li> </ul>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시각적 자극을 주지 않는 무광택 재질의 사용을 권장한다</li> </ul>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황색 - 황반사시트</li> <li>② 회색 - Pantone 434C</li> </ul>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용도에 맞게 차량이 많은 곳 및 추락위험지역에 설치한다.</li> </ul>

### <표준디자인>



11. 도로명판  
 <설치기준>

<p>형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가급적 통합설계하고 문자방식보다는 그래픽을 사용하여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아이콘을 적용하여 시인성을 높인다.</li> <li>② 규격, 색채, 정보 내용은 보행자의 속도와 행위패턴을 고려하여 적정거리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하고 불필요한 색채나 그래픽은 적용하지 않는다.</li> <li>③ 안내 사인의 일괄설계 및 통합배치를 통한 형태적 통일성으로 효과적 정보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한다.</li> <li>④ 정보표시는 정면과 배면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양방향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되 방향성을 고려해 적용한다.</li> </ul>
<p>재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스틸을 주재료로 사용하고, 부식에 강한 도장(무광)으로 표면을 마감한다.</li> </ul>
<p>색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황색 - Pantone 151C</li> <li>② 회색 - DIC 526</li> <li>③ 글자 - 백반사시트</li> </ul>
<p>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대중교통중심도로 내 주요 거점공간으로의 방향을 표시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li> <li>② 시설방향유도사인은 해당 방향을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으며, 다각도에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무방향성 형태로 설계한다.</li> <li>① 지면 고정장치는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li> </ul>

<표준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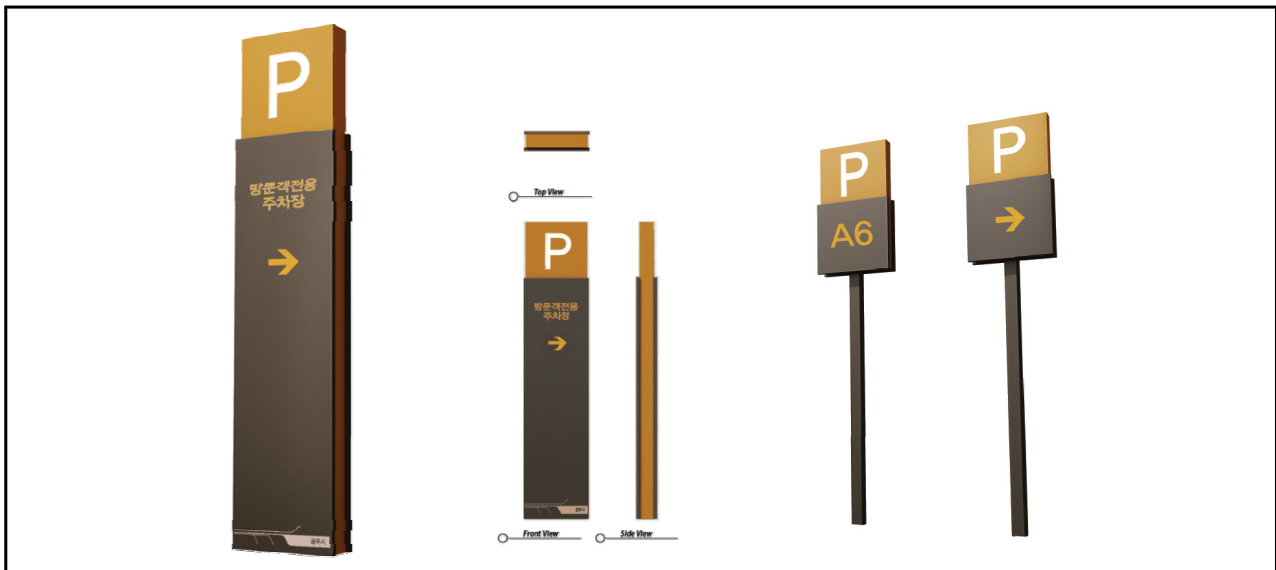


## 12. 주차표시판

### <설치기준>

<p>형태</p>	<p>①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를 권장한다.</p>
<p>재질</p>	<p>① 시각적 자극을 주지 않는 무광택 재질의 사용을 권장한다.</p>
<p>색채</p>	<p>① 황색 - Pantone 151C                  ② 회색 - DIC 526                  ③ 주차픽토그램 - 백반사시트                  ④ 그래픽 - 옥외용 시트 CMYK 0/55/100/0(관용범위:±5%이내)</p>
<p>설치</p>	<p>① 주차장입구 설치를 권장한다.                  ② 지면 고정 장치는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p>

### <표준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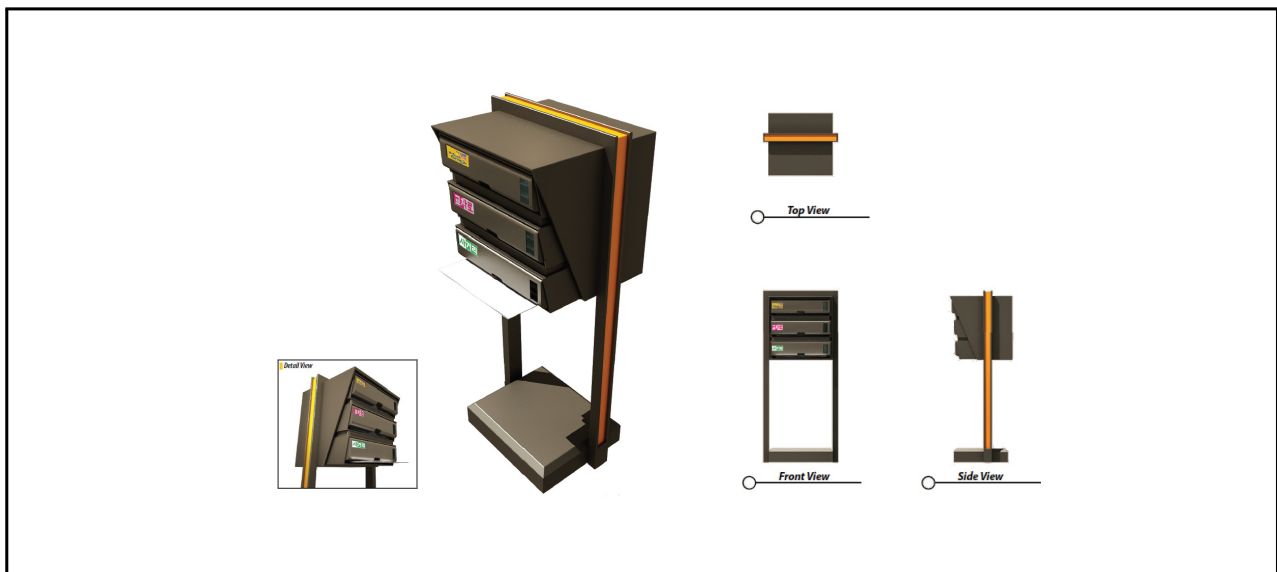


### 13. 통합정보지함

#### <설치기준>

형태	①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를 권장한다.
재질	① 시각적 자극을 주지 않는 무광택 재질의 사용을 권장한다.
색채	① 황색 - Pantone 151C ② 회색 - DIC 526
설치	① 사람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하되 최소한의 설치를 권장한다. ② 지면 고정장치는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표준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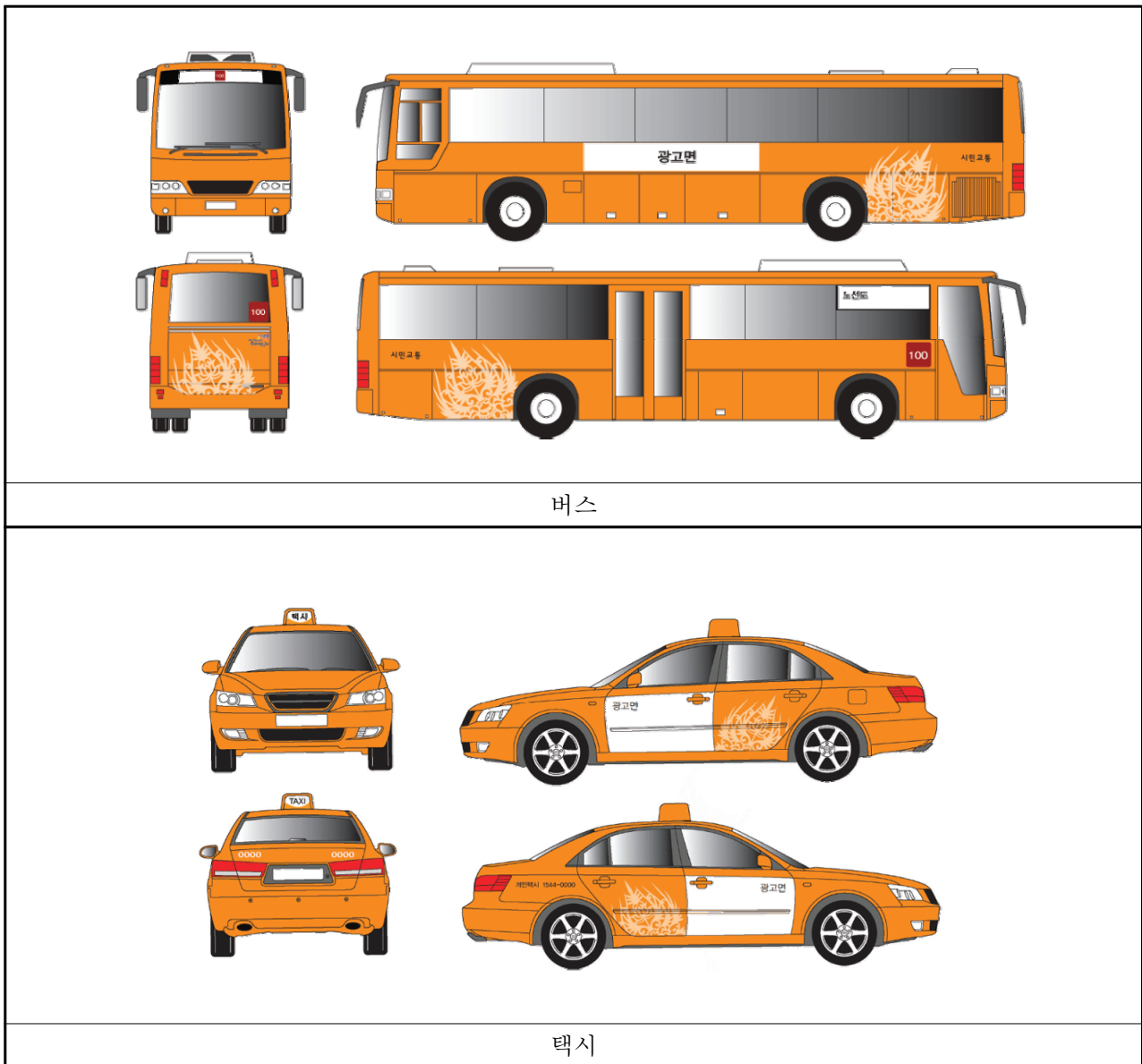


## 14. 버스·택시 외부도색

### <설치기준>

<p>색채</p>	<p>① 황색 - Pantone 151C                  ② 왕관그래픽 - 옥외용 시트 CMYK 0/18/32/0(관용범위:±5%이내)                  ③ 글자 - 옥외용 시트 CMYK 0/0/0/100(관용범위:±5%이내)</p>
<p>설치</p>	<p>① 광고면은 차량의 구조와 위치를 파악하여 디자인 한다.</p>

### <표준디자인>



[별표 2]

공주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글씨체 및 색채(제4조 관련)

1. 글씨체

공공사인에 사용되는 글씨체는 표준적이고 알기 쉬운 것을 기본으로 한다.  
 한국어는 나눔명조R, 나눔명조B, 윤고딕310, 윤고딕330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어는 Myriad R, Myriad B를 사용하고, 중국어 및 일본어는 고딕계열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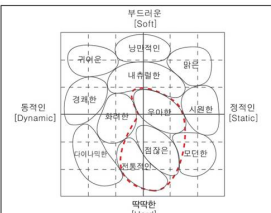
<권장 글씨체>

충청남도 공주시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1234567890	- 나눔명조R	Gong-Ju - Myriad R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1234567890
충청남도 공주시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1234567890	- 나눔명조B	Gong-Ju - Myriad B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1234567890
충청남도 공주시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1234567890	- 윤고딕310	
충청남도 공주시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1234567890	- 윤고딕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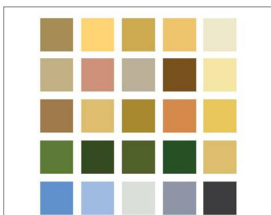
2. 색채

주조색으로는 고명도의 무채색계열과 YR, Y계열의 고명도/저·중채도, 보조색은 중명도의 무채색계열과 YR, Y계열의 중명도/중채도, 강조색으로는 저명도의 무채색계열과 YR, Y계열의 저·중·고명도/저·고채도 위주의 색채를 사용한다.

<권장색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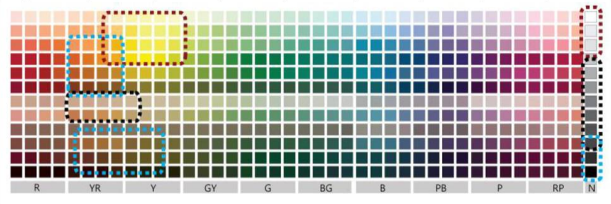


( 색채이미지 스케일 )




( 색채조사 분석결과 색채알람표 )

부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고	중	저	고	중	저	고	중	저	고	중	저	고	중	저	고	중	저
명도																		
채도																		
YR	●																	
Y							●											
N																		



( 색채 사용 범위 )



( 배색이미지 )

## 측량기준점 성과고시

측량 기준점 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3년 01월 일

# 공 주 시 장

1. 소 재 지 : 공주시 일원
2. 설치년월일 : 2013. 01. 08.
3. 점 수 : 10점
4. 측량성과 보관장소 : 공주시청 토지과
5. 기준원점명 : 중부원점
6. 측량기준점 번호 및 평면직각 종·횡선 수치(지적도근점)

일련 번호	기준점 구 분	기준점 번 호	토지소재	좌 표		재질	비고
				종선(X)	횡선(Y)		
1	지적도근점	11888	탄천면 광명리 737-3	313430.44	206714.05	플라스틱	
2	지적도근점	11889	탄천면 광명리 737-2	313478.37	206576.07	철재	
3	지적도근점	11890	탄천면 광명리 737-3	313396.20	206488.81	표석	
4	지적도근점	11891	탄천면 광명리 737-30	313460.59	206440.31	철재	
5	지적도근점	11892	탄천면 광명리 733-19	313472.08	206345.69	철재	
6	지적도근점	11893	탄천면 광명리 737	313425.86	206252.76	표석	
7	지적도근점	11894	탄천면 광명리 737	313493.21	206161.47	표석	
8	지적도근점	11895	탄천면 광명리 737	313576.46	206031.10	철재	
9	지적도근점	11896	탄천면 광명리 737	313495.37	205908.90	표석	
10	지적도근점	11897	탄천면 광명리 737	313484.40	205812.83	표석	

## 입 법 예 고

「공주시 고마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 월 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 이유

- 공주시 웅진동 347번지 일원에 건립하는 고마 관리 및 운영과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고마 준공에 맞추어 적정 사용료 부과기준 등 운영방안 마련

#### 2. 주요 내용

- 가. 고마의 위치, 용어 등 정의 (안 제2조, 제3조)
- 나. 고마 관리 및 운영 기준 마련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12조)
- 다. 고마 사용료 부과기준 마련 (안 제7조, 제8조, 제9조)
- 라. 지도 감독(안 제15조)

###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관광과(관광개발담당)

- 주소 : 공주시 봉화로 125/ 우편번호 314-090

- 전화 : 041)840-2838, FAX : 041)840-2848

### 4. 참고 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고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고마는 공주시 웅진동 347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마”란 컨벤션 및 전시장을 포함한 토지와 건물, 각종 시설물 등 모든 부동산을 말한다.
2. “컨벤션”이란 회의 및 그 밖의 행사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이란 고마와 부속시설,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제4조(운영) 고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각종 전시회, 박람회 및 이벤트 행사
2.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연회 등
3. 그 밖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사용허가에 필요한 조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용기간 등) ① 고마의 1회 사용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며, 동일인의 주관 행사 또는 동일목적의 행사로 최대 30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1일 사용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기간과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면제

가. 공주시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

2. 100분의 30 감액

가. 20명 이상 사이버공주시민증을 제시하는 경우

나. 50명 이상 공주시 한옥마을에 숙박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사용허가신청 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한 시설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위반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전시회 또는 행사

2. 전시작품 이외의 상품을 거래하는 상행위를 함께하는 전시회 또는 행사
3. 고마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전시회 또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고마의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제7조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고마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고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수탁자가 고마에 새로운 시설물을 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아 증축·개축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공주시에 기부 채납해야 한다.
3.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해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한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수탁한 재산을 전대하거나 수탁관리권을 양도하는 경우
4. 제13조 수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에 그 뜻을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위탁취소 된 날부터 5년간 고마의 수탁자격을 상실하고, 수탁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다시 위탁을 받을 수 없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위탁시설의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재 위탁 여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보험가입) 시장은 시설운영으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고마 시설 사용료 (제7조 관련)

### 1. 회의실 사용료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면적(m <sup>2</sup> )	오전	오후	야간	1일	비고
			(09:00~12:00)	(13:00~17:00)	(18:00~21:00)	(09:00~21:00)	
컨벤션홀	1	181	271	362	271	579	
	2	182	271	362	271	579	
	3	187	279	372	279	595	
	전체	550	656	876	821	1,402	
리셉션홀		264	396	528	396	772	
세미나실	1	90	135	180	135	288	
	2	92	138	184	138	294	
	3	99	148	198	148	316	
	4	92	138	184	138	294	
	5	63	94	126	201	94	
	6	87	130	174	278	130	
	7	109	163	218	348	163	
향토역사자료실	1	51	61				
	2	66	79				
	3	63	75				
	4	54	64				
문화학습체험실	1	50	60				
	2	20	24				
	3	48	57				
역사인물전시관	117	140					

### 2. 다목적 전시장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면 적	1일 사용료	할인율		비고
			1·2·12월	7·8월	
전시장	140m <sup>2</sup>	168,000	30% 할인	40% 할인	1,200원/m <sup>2</sup>

(비고) 1. 시설 사용시간 초과 시 시간당 1일 시설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다만, 초과 시간에 대한 시설사용료는 1일 사용료를 초과할 수 없다.

2. 시설 사용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한다.

[별표 2]

## 사용료 환급기준 (제9조 관련)

구 분	환급 및 배상기준
<p>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li> <li>○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li> <li>○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li> <li>○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료 전액 환급</li> <li>○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li> <li>○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li> <li>○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li> </ul>
<p>2.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li> <li>○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li> <li>○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li> <li>○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료 전액 환급</li> <li>○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li> <li>○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li> <li>○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li> </ul>
<p>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료 전액 환급</li> </ul>







# 관련법령 발췌문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행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공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의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 하도록 한다.